

사법개혁과 인권

- 로스쿨도입과 사회적 차별 -

임재홍*

1.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개혁 쟁점, 로스쿨 도입 경과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로 약칭함)가 2004년 1년여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이하 '건의문'으로 약칭함)을 2004년 12월 31일 제출했다.

사개위의 건의문을 기초로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을 마련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로 약칭함)가 2005년 1월 18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법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한 의제는 상당히 많지만 여기서 특히 인권 관점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로 약칭함) 도입 부분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법학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대학원수준의 전문교육방안과 법조인의 질과 공익성을 염두에 둔 양성인력의 설정,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적·인적 조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 인가를 통한 양성기관의 설정 등이 골자로 되어 있다.

그 핵심적 내용은 사개위 제19차 전체회의에 대법원이 제안한 바 있다.

대법원이 제안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로스쿨을 도입하며 그 2008년 정도에 신입생을 모집하며, 로스쿨의 전체 입학정원은 초기 단계에서 현재의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1천200명가량(변호사 자격시험합격률 80% 감안)이 적정 인원이라는 것,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으로 ①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대 15명(일본 기준과 동일) 또는 1대 12명 이하 ② 전임교수 20명 이상 ③ 전임교수 중 20% 이상이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일본 기준과 동일) 등을 제시했다.

이상의 내용 중에는 논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추진될 일정과 내용의

* 영남대 법대 교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 사법개혁위원회의 로스쿨 도입론 비판

사개위는 이렇게 미국식 로스쿨을 상당히 변형시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변형이 가해진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변형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통해 그 이유를 간접적이거나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개위의 로스쿨 도입안은 간단히 정의하면 “인가제와 정원제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로스쿨 인가제를 통해서 입학정원을 1200여명 선으로 통제한다는 것과 더불어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합격비율 80%로 해서 약 1000여명 정도로 한다(정원제)는 것이다. 즉 정원제를 유지하되 합격률을 올려 종래 문제된 법학교육의 파행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설계는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1) 장점

이러한 구상의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상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로스쿨의 교육정상화일 것이다. 즉 합격률의 보장으로 법학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 법학교육의 충실화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예상되는 장점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학에 분산해서 인가를 하는 경우 지방분권이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법학교육여건을 강화함으로써 교육내용의 충실성도 기대된다.

2) 단점

반면 사개위식 로스쿨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 순으로 대학서열화가 고착되고 고시낭인이 아닌 로스쿨 준비낭인의 엄청난 양산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부차적이고 주요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① 법조인 공급통제(인가제+ 정원제)를 통한 법조인의 특권유지

사개위안의 초점은 외관상 드러난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전문화에 일조할지 모르나 철저히 법조인의 직역이기주의에 입각한 점에서 문제가 크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으나 여부는 인권이 보장되느냐의 척도가 된다. 그런데 법률서비스의 가격이 높으면 일부 계층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그렇지 못한 계층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변호사의 업무를 사적인 업무로 보든 아니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직업인만큼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자격제로서 일정한 전문지식을 갖추면 누구나 변호사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의 정원제는 과도하게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 전체의 독과점 지위를 부여하고 특권계층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번 사개위안 역시 로스쿨설립 시 인가제를 유지하고 사법시험의 정원제를 전제함으로써 사법개혁의 기본 과제를 은폐하고 있다. 사개위안은 변형된 정원제로서 국민의 인권보장이 아니라 법조인의 특권과 이기주의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② 재산에 따른 법률직업전문대학원교육기회의 차별

사개위안에 의하면 로스쿨 설립 시 전임교원 확보비율의 강화, 물적 설비의 강화, 실무교원의 보충 등으로 인해서 법학교육여건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은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기준이다. 법조인이 특권계층도 아니고 법학교육이 특권적 학문도 아닌데 이런 엄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단 의문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적 요소와 물적 설비를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정이 된다. 더구나 엄격한 사후 평가까지 도입된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일단은 인가를 받는 대학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학교가 제1차적으로 부담한다면 로스쿨 설립과 운영의 능력은 자본력이 있는 대학에 한정될 것이므로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인가여부의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학교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있는가? 로스쿨의 인가를 받으려는 동기는 다양할 것이기에 직접적으로 단언하기 힘들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가는 로스쿨 입학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학부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누구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스쿨이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학부 4년 교육을 이수해야만 로스쿨입학자격이 취득된다는 점이다. 로스쿨의 비용과 더불어 학부를 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먼저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상황을 보면 누구나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교육부의 대학정책을 보면 고등교육의 비용이 계속해서 학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교육부의 신자유주의대학정책은 교육개방과 대학의 기업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교육개방은 이미 일반개방과 사전개방이 양허안 제출이나 법률로 제도화된 부분이 많다. 2003년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양허계획안은 초·중등 교육은 원칙적으로 개방하지 않되,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일부분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 해외유학은 제한 없이 허용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운영을 허용하되, 비영리 학교법인에 한하여 설립을 허가하고, 보건·의료 관련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기능대학을 제외시켰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내에서 학교 신설을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개방의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지만, 국가의 보조금지급부분만 한정해서 본다면, GATS 제15조 제1항은 일반적 의무의 하나로 “회원국은 특정 상황에서 보조금이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여 보조금에 대한 다자간규율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은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간주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사안에 관해 동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고려가 부여 된다”고 규정하여 개방대상이 아닌 교육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허용되지만 개방대상 분야에 대한 지원여부는 협상을 해서 결정해야 하게 된다.

고등교육의 개방과 보조금지급이 장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도래된다. 단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을 사영화해야 하고, 재정책임도 면하려 하고 있다. 결국 대학은 재정부분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의 기업화정책을 인정하고 국공립대학간 통합이나 M&A, 청산절차의 인정 혹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인정해 주고 있다. 기부금입학도 이런 맥락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국가의 재정지원이 없어지고 대학의 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수혜자부담원리가 당연히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면 대학이라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서 이 서비스의 가격이 달라질 것이다. 대학이 재원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헤쳐 나가려면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되며 계속해서 대학의 등록금이 계속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교육비 지출은 증가하게 되고 교육기회는 재산적 요인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학부교육비의 증가와 대학원으로서 전문직업대학원교육비의 상당함으로 인하여 전문직업교육의 기회는 사회의 일정 유산자계층에게 한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물론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이 재산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요인도 상당수 있으리라 본다). 로스쿨처럼 전문

직업대학원 교육방식이 미국식제도라는 것도 교육기회가 재산적 요인에 의해서 규정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귀족교육의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는 개인의 학교선택이나 학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 특히 경제적 지위에 의하여 규정을 받는다.

우리의 경우에는 인구는 많은데 비해 자원이 부족하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별도의 재원이 부족하여 교육을 통하여서만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교육상황은 언제나 과열된 상태에 있었다. 학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수입의 차이가 나타났던 것이다.

다만 교육의 기회는 세습이나 상속이 되지 않는 관계로 과도한 교육열, 입시지옥, 입시위주의 교육, 각종 교육비리, 공교육의 불신, 사교육의 팽창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났다(분명 이 점은 문제이고 공교육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의 결과나 시험성적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배분된 결과 교육을 통한 지위상승이 가능했고 사회적 활력이 유지되는 긍정적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 근현대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신분을 대신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교육기회를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능력주의 사회실현의 기본 조건이자 능력주의적 사회평등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김영화, 교육평등과 불평등, 83쪽)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교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만든 선행교육, 사교육의 팽창의 결과 사교육비를 조달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는 분명한 차별이 나타난다.

가령 통계적 분석을 통해 고등교육으로의 이행에 관한 분석 결과,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의 사회적 자본이 있을수록, 실업계 출신보다는 일반계 출신일수록 대학진학 확률이 일반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방하남/김기현, 기회와 불평등 :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이러한 가정은 당연히 현실화된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추이가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 20-22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하느냐 아니냐에 미치는 출신계층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상, 신중간, 구중간계층 등 중간계층과 근로, 도시하류계층 등 서민층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화, 교육평등과 불평등, 88쪽)

이러한 사실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은 외관상으로는 교육을 통한 능력주의 사회가 실현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적이라는 합법적 기제를 통해 은밀하게 계층 간 불평등재생산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사교육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불평등재생산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지출이 가구

의 소득수준에 비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서울시내 25개 구청별 일류대학 진학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진학률이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노회찬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생 4,352명에 대한 분석결과 강남구와 서초구 두 구청 출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사법고시 합격률이 부산을 제외한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광역시 배출 학생수 보다 높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속에 교육과 입시제도에 이어 사법시험까지 부와 특권계급이 세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학력 또는 사회적 지위의 배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지 직접적인 규정요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 만약 이러한 간접적 영향의 정도가 극심해진다면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간접적 영향의 정도를 직접적 영향으로 간주할 만한 자료는 아직 없다.

우리 사회의 교육상황을 볼 때 “간접적 영향의 과다”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교육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것이며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위계층의 입장에서는 교육평등의 기회를 요구할 것이며 국가가 좀더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여 누구나 평등한 교육기회를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간접적 영향을 직접적 영향으로 바꾸기를 원할 것이다. 상위계층으로 부가 집중되고 상하위계층간 격차가 벌어질수록 상위계층은 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일 원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학교의 ‘자율성’ 부여라는 구호로 나타나나, 실질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선발이나 교육여건에 차등을 두려는 것이다. 미국의 학제운영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은 ‘학교와 교사를 선택하는 권리의 보장’이다(이규환, 교육의 평등화를 지향하는 학제, 103쪽).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면 미국처럼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길 원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부모가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자녀를 등록금이 아주 비싼 명문사립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거쳐 명문 사립대학으로 진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명문 대학에서 잘 받아주기 때문에 부모들은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면서도 자녀를 명문 사립학교에 보낸다(박남기, 교육전쟁론, 장미출판사, 2003). (* 우리의 경우에는 고교평준화정책의 실행으로 이러한 부유층만의 학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8학년과 같은 것이 최대한의 변형이 아닌가 한다.) 기부금 입학제도도 이러한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제도의 하나이다.

보다 세련되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방법도 있다. 사회의 지위 배분 방식에서 학력과 교육비

를 결합시키는 방식이다. 직업전문대학원을 나와야 전문직을 배분받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되어야만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직업전문대학원의 졸업이라는 학력을 사회적 지위배분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학교의 계급재생산기능은 더욱 강화된다. 이 경우 하위계층은 고위공직자로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박남기, 교육전쟁론재탐색, 25쪽).

전문직업대학원이 반드시 계급재생산 기능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는데 대해서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 중 하나인 학력타과라는 관점에서 전문직업대학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가령 주경복은 “고등교육 부문에서 대학의 서열화와 전공의 서열화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해 오던 영역들 가운데 하나를 재편해 넘으로써 교육개혁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기초학문, 응용학문, 직업교육의 기능적 분화를 통해 각 부문의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률전문대학원의 도입과 더불어 행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행정 관료를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MBA), 건축전문대학원, IT전문대학원 등을 유사한 흐름에서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고급 전문직업 인력은 공공성이 보장되고 전문성과 인격이 종합적으로 습득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원에서 양성되어야 한다”라고 한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학서열화, 학부(과)서열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적인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건들의 달성이 우리 사회에서 가능할 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경복은 그 조건으로 ① 운영주체의 공공성 확보 ② 교육비용의 국가부담 원칙(재정의 공공성) ③ 지식과 소양과 실무의 조화 ④ 학부와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연계 ⑤ 교수진의 유연한 순환체계 운영 ⑥ 학생-교수 수의 점진적 증원 ⑦ 법률전문대학원 수와 지역 위치의 안배를 들고 있다(주경복,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 민교협내부 발표자료). 이러한 방안이 여러 장점도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많다. 단적으로 현재 신자유주의대학정책의 기본 골격이 교육비용에 대한 국가책임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방안에 적극적일지도 미지수이다.

현재의 교육부 대학정책과 입시에서 다원적 요소의 도입, 시험이 아닌 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배분, 직업전문대학원을 결합시키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 반(半)직접적 영향으로 확대되게 된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는데 드는 교육비의 자율화에 따른 교육비용증가 폭이 커질수록 그러하다. 이렇게 형성되는 (부모의 반직접적 영향을 받는) 학벌주의는 종래의 (사교육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력주의에 입각한) 학벌주의보다 폐해가 더 심각해진다.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계급고착화를 초래할 것이며 계급고착화는 교육기회를 더 불평등하게 할 것이다. 직업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악순환 고리의 한 축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하여 사회적 전문직업의 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능력사회에서 신분사회로의 후퇴는 ‘신흥귀족’에게는 신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갖겠지만 공교육체제는 무너진다. 교육을 사적인 영역에 두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화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공교육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교육체제의 붕괴와 계급교육은 현재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계급교육은 상위계층의 이기적인 욕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현대자본주의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문제점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준경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연구팀장은 ‘계간감사’ 신년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국가적 인적자본 축적의 저해→경제적 지위 상승의 통로가 막히면서 심화되는 사회 불안→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기업투자 위축→양극화 심화’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면서 “영국과 미국 등 앞서 양극화 문제를 겪은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교육을 통한 재분배’로 양극화를 대폭 완화했다”며 정부에 ‘성장촉진형 재분배’ 정책을 주문했다.

사개위 보고서는 이런 점을 의식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 귀퉁이에 담고 있다.

- 경제적 약자가 증가된 교육비용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곤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도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의 재정상태, 장학금 제도 등을 인가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데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교육인 학부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철폐되는 마당에 사적인 직업을 위한 직업전문대학원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고 자체가 모순적이며 현실성이 결여된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의 실질적 기회보장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재산상태와 무관하게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특히 교육을 받은 후 사회로의 진출에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에 의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부계층의 이기적 욕구에 의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하여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도설계는 그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어서는 안된다. 직업전문대학원은 그 자체로는 몰라도,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상황 즉 부의 양극화, 고등교육의 비용증가, 교육 개방, 폭발적인 사교육비 등등을 감안할 때 개선이 아닌 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로스쿨은 장점에 비해 단점이 많은 제도이다. 따라서 그 시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자격제 시험으로 전환하고,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로스쿨 인가기준에 하회하는 적정 기준(예를 들면 전임교원 15인 이상, 교수 학생의 비율 1:20, 필요한 물적 시설의 확보 등)의 요구 등이 필요하다.

3.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평가

1)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대부분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대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으며 사법부에 무언가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래서 비판의 초점은 당연히 사법시험합격자 수이고 그 전제로서 로스쿨 입학정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입학정원으로 3,000명을, 참여연대는 “과도기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 조치로서 로스쿨 설립에 대한 인가주의를 취한다 하더라도 (1) 수년 이내에 완전한 준칙주의로의 이행을 약속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며 (2)로스쿨 정원을 현 사법시험 제도보다 획기적으로 증원한 상태(최소한 현재의 1200-1300명 안의 2-3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일부 언론도 로스쿨을 당연한 전제로 논의하는 점에서 개혁안으로서의 로스쿨은 상당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사개위 로스쿨안의 한 가지 문제점만 보았지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없어 보인다.

2) 법학교수들의 입장

법학교수들의 입장은 복잡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소속된 대학의 입장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의 입장이란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사개위안처럼 인가를 하는 경우,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으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종래의 특권을 상실하는 경우를 더 염려할 것이다.

둘째는 로스쿨을 인가받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는 있지만 입학정원의 한정으로 인하여 인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대학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들에서는 인가주의보다는 엄격준칙주의로 가는 것이 보다 선호된다. 즉 엄격준칙주의를 통해 인가를 받되 중소형 규모의 대학들이 엄격준칙주의에 의하여 로스쿨 설립을 못할 때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인가든 엄격준칙주의이든 로스쿨 설립이 어려운 중소규모의 대학들이다. 이들은 법학교육을 로스쿨로 전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는 교수들이 로스쿨에 대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유가 되며 결국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중 누구의 소리가 커질 것이냐는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아마도 둘째 그룹과 셋째 그룹은 확실한 자기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법과대학 학장협의회나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법교연)의 준비상황을 보면 40여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5개 대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장요지는 다음 4개이다.

1. 법학교육개혁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2. 법조인 수의 대폭 증가를 전제하지 않는 법학교육 개편 움직임에 반대한다.
3. 총 입학정원을 소수로 제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국민의 여망에 대한 배신이다.
4. 법학교육개혁의 졸속·밀실추진을 중단하고, 법학교육개혁 논의에 진정한 법학교육계 대표를 참여시켜라.

그러나 이해관계를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문장이 아닌가 한다.

법조실무가를 양성하는 교육이든 건전한 법지식을 갖춘 교양인을 배출하는 교

육이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법학교육기관에는 모두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일일 뿐 아니라 정의에 반하며, 더욱이 위헌적이다.

여기서 보이는 '역량과 의지'라는 개념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역량이란 능력개념인데 법조실무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조건을 갖추 수 있는 대학이란 개념으로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참여대학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선발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이나, 아무리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하더라도 개혁인 만큼 참여의사를 갖고 있는 모든 대학에 로스쿨의 설립기회를 주는 것은 대법원이나 대한변협과의 충돌을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끝까지 관철시키려 든다면 앞서 본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두 번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개위안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한다면 아마도 사법고시 선발인원의 소폭증원에 로스쿨 입학정원의 증폭 증원일 것이다. 이러한 것도 사개위안에 비하면 그나마 첫 번째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질지 모르나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사법시험선발인원에 대한 획기적 증원 없이 로스쿨 입학정원만을 늘리는 경우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처럼 선발인원의 확대 없이 입학정원만 확대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경우처럼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고시낭인이 상당수 존재하게 되고 로스쿨의 법학교육은 지금처럼 다시 부실하게 될 것이다. 지금 로스쿨 설립에 이해관계 있는 대학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일단 로스쿨을 설립하려고 들것이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타협되면 첫 번째 문제점도 해결하지 못한다. 당연히 두 번째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다.

4. 관점의 변경이 필요하다.

종래까지는 법학교육의 문제를 단순히 사법개혁의 측면에서만 보았다. 따라서 변호사 선발인원의 획기적인 증원만 된다면 법학교육을 학부로 할지 아니면 대학원에서 할 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현행제도(학부교육 + 정원제 사법시험)보다 대학원교육(학부 졸업자 + 3년 로스쿨)이 (법조인 수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하면) 보다 우수한 법조인력을 배출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법조인양성이라는 단일한 가치에 입각해서는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 동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국민을 위한 법조인의 획기적 증대라는 것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문직업의 취득에 최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안까지 고려한다면 단지 변형된 한국식 로스쿨로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법학교육기회의 평등, 변호사 자격취득기회의 평등, 공직자(판검사) 임용에서의 기회 평등까지를 모두 고려하는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